

정정신고(보고)

2025년 8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일괄신고서

삼성KOSPI200인덱스플러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 04. 17

3. 정정사유

- Ae, C-P, C-Pe, Cp(퇴직연금), Cpe(퇴직연금) 클래스 추가
- 투자신탁 명칭 변경(삼성인덱스플러스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파생형] → 삼성KOSPI200인덱스플러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 투자한도 추가 등
- 정기 결산으로 인한 갱신(VaR 및 위험등급(2 → 1등급) 변동, 재무정보 확정)

4. 정정요구 · 명령관련 여부: 아니요

5.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표지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감안하여 2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감안하여 1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요약정보		
투자신탁 명칭변경	삼성인덱스플러스증권 제1호[주식-파생형]	삼성KOSPI200인덱스플러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투자비용	-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	업데이트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추 가) 변경 사항 (추 가)		변경시행일 2026. 9. 2 변경 사항 투자신탁 명칭 변경(삼성인덱스플러스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파생형]→삼성KOSPI200인덱스플러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투자위험등급 변경(2등급(높은 위험)→1등급(매우 높은 위험)), 클래스 추가	
	-		업데이트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나. 종류형 구조 (2)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추 가) (3)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추 가)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업데이트 나. 종류형 구조 (2)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별첨 1] (3)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별첨 2]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주식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다만, 주식에의 투자는 주식 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함.	투자대상 주식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하며, 이하 “주식”이라 한다) 주식에의 투자는 주식 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2), 4)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함. 나. 투자 제한 (1) 이 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위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함. 나. 투자 제한 (1) 이 투자신탁의 투자제한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투자한도 초과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한도 초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위의 투자한도(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제외)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동일종목투자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파생결합증권(2011년 2월 3일까지는 가목의 투자비율까지 투자 가능), 법 시행령 제79 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이 목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 또는 은행·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과 게 위의 투자한도(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제외)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동일종목투자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2011년 2월 3일까지는 가목의 투자비율까지 투자 가능),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계열회사 투자 한도 초과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후순위채권에 투자 투자신탁자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계열회사 투자 한도 초과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해당 증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투자위험등급구분] 1등급: 매우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낮은위험 6등급 중 2등급 주2)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97.5% VaR는 37.04% 입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6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투자위험등급구분] 1등급: 매우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낮은위험 6등급 중 1등급 주2)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97.5% VaR는 80.86% 입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투자신탁 관련 보수등 - (추 가)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투자신탁 관련 보수등 업데이트 [별첨 2]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	라.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 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그 사유를 포함한다)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첨 1]

클래스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온라인(Ae)	온라인(On-Line) 판매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매수 청약할 수 있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별첨 2]

클래스 종류	수수료	보수 (연, %)			
	선취판매	집합투자	판매	신탁	일반사무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 이내	0.54	0.23	0.0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0.54	0.89	0.05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0.54	0.44	0.0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퇴직연금))	-	0.54	0.69	0.05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퇴직연금))	-	0.54	0.34	0.05	-